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 적용 배제 >  
■ 박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118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일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2 |
| □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 적용 배제 ..... | 2 |
| ※ 참고자료 .....                       | 8 |
| 1. 관광특구 지정 현황 .....                | 8 |
| 2. 관광특구 특례 .....                   | 9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박정훈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2026. 6. 8.

다. 회 부 일: 2026. 7. 1.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지역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대형마트에 대하여 매 월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K-쇼핑에 대한 수요 또한 확대되고 있음. 그럼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 방문하는 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함에 따라 외국인의 관광 소비지출을 제약하고 있으며, 관광특구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에 대하여는 의무휴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를 제고하고, 관광 소비를 촉진하며, 나아가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4항 신설).

### Ⅲ. 검토의견

#### □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 적용 배제

#####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의무휴업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4항 신설).

#####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략)<br><u>&lt;신설&gt;</u> |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br>④ <u>관광특구 안에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형마트에 대하여는 같은 조에 따른 의무휴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

##### 다. 검토사항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sup>1)</sup>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전한 유

1)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이들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관광진흥법」<sup>2)</sup>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들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 「관광진흥법」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일 것

2. 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③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

사가 관광특구를 지정하도록 하고<sup>3)</sup>,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제한 적용 배제, 공개 공지(空地) 사용,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제한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타 법령에 따라 관광특구 지역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기준 완화, 의료 광고 특례,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등의 특례가 적용되고 있음<sup>4)</sup>.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관광특구 안에 위치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으로 인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지출이 제

---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으로 본다.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 활동을 위하여 관광특구 안의 문화·체육·숙박·상가·교통·주차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관광특구 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광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광특구 지정 현황은 [참고자료 1] 참조

4) 관광특구 특례는 [참고자료 2] 참조

한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관광특구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2026년 기준 14개 시도에 37곳의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관광특구 내 25개의 대형마트가 운영 중임.

### [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 현황 ]

|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대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
| 특구   | 8  | 3  | 1  | 1  | 1  | 5  | 2  | 3  | 2  | 2  | 2  | 4  | 2  | 1  | 37 |
| 대형마트 | 3  | 3  | -  | 1  | 1  | 4  | 6  | -  | 1  | -  | 1  | -  | -  | 5  | 25 |

출처: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

이에 개정안은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의무휴업일 지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 제고 및 관광특구 내 소비 확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 적용 배제 필요성과 함께, 전통시장·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중소유통

업 상생 취지와 충돌 우려가 있어 지역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 추진을 통해 외래 관광객의 편의 대응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산업통상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특례 법제화는 사회적 합의, 입법기관의 검토·논의 등이 우선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등은 지역상권 보호 필요성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와 같이 전 지역이 관광특구인 지역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특례의 일률 적용이 곤란하므로, 지역상권, 소상공인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전국상인연합회는 대형마트 영업 확대는 전통시장·골목상권의 매출 감소, 소상공인 경영 악화 및 지역경제 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상공인·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분석과 상생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적용 제외가 관광특구 방문객 증가, 체류시간 확대, 소비 증대 등 실질적으로 관광

특구 활성화 효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반면에,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 적용 제외 특례 조항 신설 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 제고, 관광 소비 확대 및 관광특구 실효성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
|-------|
| 문 의 처 |
|-------|

|              |
|--------------|
| 02)6788-5377 |
|--------------|

## ※ 참고자료

### 1. 관광특구 지정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           | 특구명               | 지정 지역(소재지)                                                    | 면적<br>(km <sup>2</sup> ) | 최초<br>지정일  |
|--------------|-------------------|---------------------------------------------------------------|--------------------------|------------|
| 서울(8)        |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 명동, 회현동, 소공동, 무교동·다동 각 일부지역                                   | 0.87                     | 2000.03.30 |
|              | 이태원               | 용산구 이태원동·한남동 일원                                               | 0.38                     | 1997.09.29 |
|              | 동대문 패션타운          | 중구 광희동·을지로5~7가·신당1동 일원                                        | 0.58                     | 2002.05.23 |
|              | 종로·청계             | 종로구 종로1가~6가·서린동·관철동·관수동·예지동 일원, 창신동 일부 지역(광화문 빌딩~송인동 4거리)     | 0.54                     | 2006.03.30 |
|              | 잠실                | 송파구 잠실동·신천동·석촌동·송파동·방이동                                       | 2.31                     | 2012.03.15 |
|              | 강남마이스             |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                                               | 0.19                     | 2014.12.18 |
|              | 홍대 문화예술           | 마포구 홍대 일대(서교동, 동교동, 합정동, 상수동 일원)                              | 1.13                     | 2021.12.02 |
|              | 고터·세빛             |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및 고속터미널 일대                                         | 0.84                     | 2024.12.26 |
| 부산(3)        | 해운대               | 해운대구 우동·중동·송정동·재송동 일원                                         | 6.23                     | 1994.08.31 |
|              | 용두산·자갈치           | 중구 부평동·광복동·남포동 전지역, 중앙동·동광동·대청동·보수동 일부                        | 1.08                     | 2008.05.14 |
|              | 동구 크루즈            |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부산역 및 초량동 일원                                   | 1.48                     | 2026.07.08 |
| 대구(1)        | 동성로               | 성내1·2·3동, 남산1·2동, 대봉1동, 삼덕동 일원                                | 1.16                     | 2024.07.22 |
| 인천(1)        | 월미                | 중구 신포동·연안동·신흥동·북성동·동인천동 일원                                    | 3.00                     | 2001.06.26 |
| 대전(1)        | 유성                | 유성구 봉명동·구암동·장대동·궁동·어은동·도룡동                                    | 5.86                     | 1994.08.31 |
| 경기(5)        | 동두천               | 동두천시 중앙동·보산동·소요동 일원                                           | 0.40                     | 1997.01.18 |
|              | 평택시 송탄            | 평택시 서정동·신장1·2동·지산동·송북동 일원                                     | 0.49                     | 1997.05.30 |
|              | 고양                | 고양시 일산 서구, 동구 일부 지역                                           | 3.94                     | 2015.08.06 |
|              | 수원 화성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구 일대                                           | 1.83                     | 2016.01.15 |
|              | 통일동산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법흥리 일원                                       | 3.01                     | 2019.4.30  |
| 강원(2)        | 설악                | 속초시·고성군 및 양양군 일부 지역                                           | 138.10                   | 1994.08.31 |
|              | 대관령               | 강릉시·동해시·평창군·횡성군 일원                                            | 428.27                   | 1997.01.18 |
| 충북(3)        | 수안보온천             |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안보리 일원                                           | 9.22                     | 1997.01.18 |
|              | 속리산               |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상판리·중판리·갈목리 일원                                   | 43.53                    | 1997.01.18 |
|              | 단양                | 단양군 단양읍·매포읍 일원(2개읍 5개리)                                       | 4.45                     | 2005.12.30 |
| 충남(2)        | 아산시온천             |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일원                                                | 3.71                     | 1997.01.18 |
|              | 보령해수욕장            | 보령시 신흥동, 웅천읍 독산·관당리, 남포면 월전리 일원                               | 2.52                     | 1997.01.18 |
| 전북(2)        | 무주 구천동            | 무주군 설천면·무풍면                                                   | 7.61                     | 1997.01.18 |
|              | 정읍 내장산            | 정읍시 내장지구·용산지구                                                 | 3.45                     | 1997.01.18 |
| 전남(2)        | 구례                | 구례군 토지면·마산면·광의면·산동면 일부                                        | 78.02                    | 1997.01.18 |
|              | 목포                | 북항·유달산·원도심·삼학도·갯바위·평화광장 일원                                    | 6.89                     | 2007.09.28 |
| 경북(4)        | 경주시               | 경주 시내지구·보문지구·불국지구                                             | 32.65                    | 1994.08.31 |
|              | 백암온천              |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일원                                                | 1.74                     | 1997.01.18 |
|              | 문경                | 문경시 문경읍·가은읍·마성면·농암면 일원                                        | 1.85                     | 2010.01.18 |
|              | 포항 영일만            | 영일대해수욕장, 해안도로, 환호공원, 송도해수욕장, 송도송림, 운하관, 포항운하, 죽도시장, 시내 실개천 일대 | 2.41                     | 2019.8.12  |
| 경남(2)        | 부곡온천              |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사창리 일원                                            | 4.82                     | 1997.01.18 |
|              | 미륵도               | 통영시 미수1·2동·봉평동·도남동·산양읍 일원                                     | 32.90                    | 1997.01.18 |
| 제주(1)        | 제주도               | 제주도 전역 (부속도서 제외)                                              | 1,809.56                 | 1994.08.31 |
| 14개 시·도 37개소 |                   |                                                               |                          |            |

## 2. 관광특구 특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항목                | 내용 및 근거                                                                                                                                                                                                                                                                                                                                                                                              |
|-------------------|------------------------------------------------------------------------------------------------------------------------------------------------------------------------------------------------------------------------------------------------------------------------------------------------------------------------------------------------------------------------------------------------------|
| 영업제한 미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특구 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lt;관광진흥법 제74조제1항&gt;</li> <li>* 제43조(영업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li> </ul>                                                                                                                                    |
| 공개공지 사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종합여행업, 관광공연장업,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면세업을 경영하는 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lt;관광진흥법 제74조제2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3&gt;</li> </ul>                                                                                                    |
| 차마 통행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차마(車馬)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lt;관광진흥법 제74조제3항&gt;</li> </ul>                                                                                                                                                                                                   |
| 카지노 허가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1조(허가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li> <li>1. ... ... 관광특구에 있는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시설(관광숙박업의 등급 중 최상 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하며 ... ... &lt;관광진흥법 제21조&gt;</li> </ul>                                                                                                                                    |
| 옥외광고물 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관광특구)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li> <li>&lt;옥외광고물법 제3조제4항,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gt;</li> </ul>                                                                                                                                                                                                           |
| 의료 광고에 관한 특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 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는 하지 못한다.</li> <li>6.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지역</li> <li>&lt;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6호&gt;</li> </ul> |
| 특별건축구역 지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제6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시·도지사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li> <li>&lt;건축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8호&gt;</li> </ul>                                                                                                                                                                                                                               |
| 지구단위 계획지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lt;국토계획법 제51조&gt;</li> </ul>                                                                                                                                                                                                             |
|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택지 등에서 공동주택 공급 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나, 관광특구에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 배제 &lt;주택법 제57조제2항제3호&gt;</li> </ul>                                                                                                                                                                                                                                            |
| 면세판매장 지정 시 특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중 관광특구안에서 소매업·양복점업·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여도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lt;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제2항&gt;</li> </ul>                                                                                                                                                                                                   |